

중앙선거관위, 각 기관·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

=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,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=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(4월 5일~6일)과 선거일(4월 10일)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「공직선거법」 제6조의2에 따르면,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또한,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,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,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·경제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, 소속 임·직원과 산하 기관·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·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붙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부.

제22대 국회의원선거

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.

근로자

사전투표기간(4.5.~4.6.)과 선거일(4.10.)에
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
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
고용주

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,
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
선거일 전 7일(4.3.)부터 선거일 전 3일(4.7.)까지
인터넷 홈페이지, 사보,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.



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**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